

##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

제정	2001. 11. 10	규칙	제283호
개정	2003. 3. 21	규칙	제332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	2005. 10. 5	규칙	제440호
	2006. 11. 10	규칙	제521호
일부개정	2017. 10. 2	규칙	제8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9. 12. 23	규칙	제99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23]

제2조(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「용인시 포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 <개정 2019. 12. 23>

② 제1항의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는 본청과 구청에 각각 둔다. <신설 2019. 12. 23>

③ 본청에 두는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19. 12. 23>

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되며, 위원은 용인시 본청의 실·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7. 10. 2, 2019. 12. 23>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9. 12. 23>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실·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06. 11. 10, 개정 2019. 12. 23>

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
로 의결한다. <개정 2019. 12. 23>

⑧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과장으로, 서기는 포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용인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9. 12. 23>

[제목개정 2019. 12. 23]

제3조(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)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3>

- 1.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
  - 2. 공적이 질·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
  - 3.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, 조직,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
-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 12. 23>

- 1.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
- 2. 단기근속자보다 장기근속자 우선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. <개정 2019. 12. 23>

- 1. 재직 중 징계처분(불문경고를 포함한다)을 받은 자로서 징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
- 2.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

제4조(자료제출 등의 요구)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23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40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1. 10 규칙 제52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규칙 제8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 8의 회계과,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·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⑱ 까지 생략

⑲ 「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⑳ 부터 ㉓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12. 23 규칙 제99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